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2. 12.

환 경 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목 차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5
4. 추진 운영	6
5.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8
6.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8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8.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18
9. 보조사업 관리	21
10.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7
11. 보칙	31
12. 시행일	33
[부록1] 지원설비 목록	34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35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38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4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44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45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68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환경공단)	69
[별지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환경부)	70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72
[별지 제9호서식] 협약서	74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80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81
[별지 제12호서식] 착수신고서	82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83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84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	87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88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89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환경공단→업체)	90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91
[별지 제20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92
[별지 제21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96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	100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03
[별지 제24호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105
[별지 제25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106
[별지 제26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107
[별지 제27호서식] 처분통보서	109
[별지 제28호서식] 이의신청서	110
[별지 제29호서식] 종합평가서	111
[별지 제30호서식] 의결문	112
[별지 제31호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113
[별지 제32호서식] 청렴 서약서	114

1. 목 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의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 지원설비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다.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할당대상업체”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를 말한다.
-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탄소중립설비”란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무배출설비 및 각종 공정 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하며, 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록 1]과 같다.
-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 “감축목표”란 탄소중립설비 도입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예상 감축량을 말한다.
- “보조금”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가 탄소중립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보증보험”이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填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 “가정산”이란 정산 이전에 보조금의 예산 비목과 예산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사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지원업체”란 동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은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를 구분한다.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 :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는 업체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며, 사업신청서 제출, 협약 체결, 착수, 설치완료 보고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부사업자 :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로 주사업자에 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감축설비 운영·관리의 의무를 가짐
-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 “컨설팅업체”란 지원업체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시 설비의 도입, 운영·관리, 감축량 산정 및 감축실적 보고서 작성 등 사업 관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말한다.
- “사업수행자”란 지원업체가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를 제작·납품·설치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소유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수요조사”란 업체가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설비 및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의 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설치확인”이란 지원설비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설비”란 보조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 “내용연수”란 「물품관리법」 제16조2 및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업체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 “검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구 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상생 프로그램 포함)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연료 전환 설비 비용 지원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좌동
지원대상	중소·중견 및 대기업 ※ 대기업은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우선 지원	유연탄 사용 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국 고 보조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50%
지원한도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동일사업 최대 2년) ※ 업체별 10개 사업장 이내 지원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동일사업 최대 3년) ※ 지원한도(300억원) 내에서 연차별 배분
지원설비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고효율 설비 등 [부록1]의 설비	연료전환 설비

4. 추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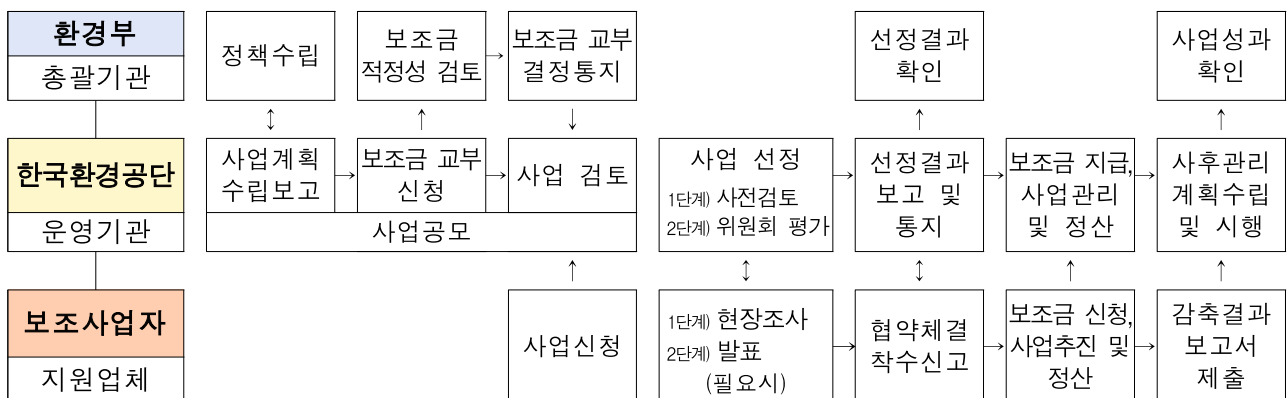
가. 사업추진 방향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 역할

- 보조사업 총괄기관 : 환경부
 - 총괄기관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정책수립,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성과확인 등 사업의 총괄 역할을 한다.
- 보조사업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으로 한다. 단, 필요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현장 확인 등 사업 운영의 특정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 : 배출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는 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 사업추진 절차



라. 책무

- 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추진하고,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원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기술적인 자료 등 동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유지 의무

- 동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보조사업 신청서 및 감측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그 외 감측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5.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가.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교부(총괄기관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가. 보조금 지원범위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업체의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한다.
- 지원한도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할 수 있다.

구 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국고 보조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대기업은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우선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50%
지원한도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동일사업 최대 2년)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동일사업 최대 3년) ※ 지원한도(300억원) 내에서 연차별 배분

※ 다만, 총 지원예산 규모 및 사업신청 현황,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연간)는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다만, 예산 잔여액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공고 시 별도 지원한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기 선정업체가 계획 대비(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계획 대비) 예산 실행 부진 및 이월 등 집행부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이 경우 당해 집행가능액을 고려하여 당초 전체 국고지원 결정액(안)을 감하여 조정 가능

- 다만, 다년도 사업은 차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그간의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설비투자비는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인정한 필수 계측설비(신규·교체)에 한해 지원한다.
-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내에서 해당 사업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나. 보조금 지원대상

- 동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공시대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유상할당 대기업’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말한다.
 - ※ 다만, 상기 법에 근거한 중소·중견기업은 아니나, 중소·중견 기업에 상당하는 규모의 기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가능
- 배출권거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는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기업규모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해서 이미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 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사업별 세부사항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투자회수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되는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절감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전력, 연료 등)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판매 가능 수익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 ※ 다만, 에너지 단가가 높은 저탄소·탄소무배출 연료로 전환하는 경우, 연료전환으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절감액 산정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설비의 설치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 이내)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사후관리(3년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처분제한(2년간)	지원업체	- 설비 처분의 제한기간 동안에 설치 설비 관리 및 관련서류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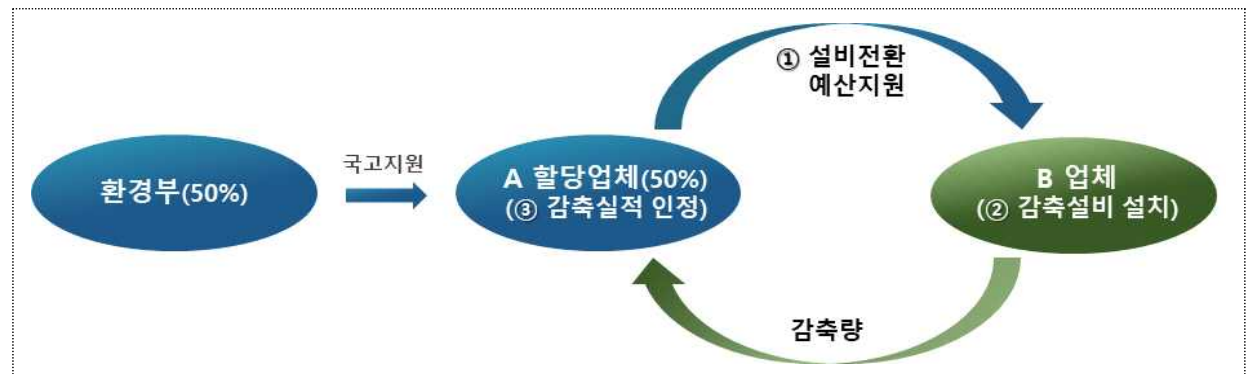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및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공통 적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은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가 주사업자(A)가 될 수 있으며, 감축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은(B) 중소·중견기업으로 한다.
-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는 사업 추진결과 발생하는 감축량의 소유권 배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전할당 시, 주사업자(A)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인 경우로, 부사업자가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기간 매년 주사업자에게 이관한 경우에는 사전할당 시 감축량을 부사업자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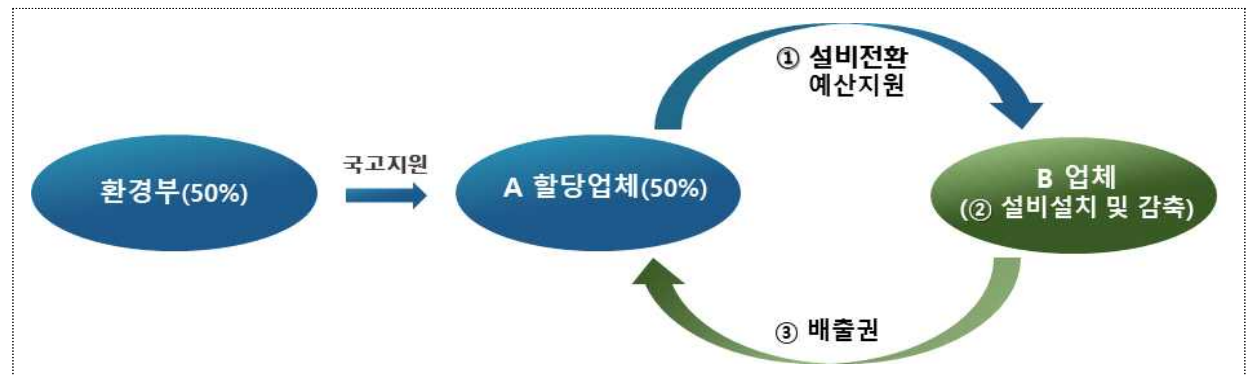
① 주사업자	- 주사업자(A업체)가 사업신청서 제출, 협약체결, 계약체결 실시 - 주사업자(A업체)는 부사업자(B업체)의 설비 설치비를 지원 (보조금 50%+주사업자 부담 50%)
↓	
② 부사업자	- 부사업자(B업체)는 설비 설치장소 제공 및 감축설비 운영
↓	
③ 주사업자	- 주사업자(A업체)는 매년 부사업자(B업체)의 감축량 관리 및 한국 환경공단에 감축실적 보고
↓	
④ 주사업자 (또는 부사업자)	- 주사업자(A) 또는 부사업자(B)는 사전할당 신청 시, 감축실적 보고서 및 감축실적 검증보고서 제출
↓	
⑤ 환경부	- 할당량 산정 시, 관련 서류 검토 평가 후 내부감축실적 인정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개요 >

- (개요)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외부사업 인정 불가)
- (방법1) ①A할당업체가 외부 B중소·중견업체(할당·비할당 무관)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에 감축설비 설치* → ③A업체의 감축노력으로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 B업체는 무상으로 설비교환 및 매년 감축량 만큼 배출량 감소



- (방법2) ①A할당업체가 외부 B중소·중견업체(할당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에 감축설비 설치* → ③A업체의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 * B업체는 무상으로 설비교환 및 차기·차차기 할당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이 A 또는 B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A 또는 B업체는 동 사업을 외부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 감축량에 대한 내부감축실적 인정, 배출권 이관 등은 업체간 계약으로 상호결정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업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대상업체)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을 지원한다.
 -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바이오매스로 전환시, 원산지가 국내인 미 이용 목재를 우선 사용할 것
 - 비가역적 연료사용을 조건으로 설비전환을 추진할 것(바이오매스 혼소의 경우는 당초 계획의 혼소비율 유지)
- ※ 연료전환시 전소·혼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연료를 LNG, 바이오매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 한다.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업계 기술 전문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 운영기관은 지원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기술)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 사업신청서 검토·평가·선정(보조금액, 우선순위 결정 등)
 - 온실가스 감축설비(기술) 검토·선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
 -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환경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분과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 또는 심의 관련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구성 명단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 위원회 심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심의 안건 및 환경적(코로나19 등 전염병) 요인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에서 심의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영기관 소속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간사는 운영기관에서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사전검토 내용, 심의기준 및 자료 등을 출석위원에게 제공 및 설명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 비밀유지 의무

- 운영기관 및 위원회 위원 등은 보조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석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1호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32호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가. 사업공고

-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일정, 신청방법, 선정절차
 - 보조사업 지원설비
 -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공고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신청서 제출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서는 설비군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동일한 신청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 사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설비를 다량 신청하는 경우, 설비별로 사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신청 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의 특수성(설비의 독점 제작 또는 판매 업체로 비교견적 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운영기관과 서류 제출수량 조정 가능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한 감축량 산정 적용방법, 사업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사업계획에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열판매 단가 등 관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 운영기관은 설비투자비, 온실가스 감축량, 절감 비용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활용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수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계분야 전문가 섭외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업체에 대한 신청자격의 적합 여부
 - 지원설비 대상 여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
 - 설비투자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적정 여부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온실가스 감축량 확인을 위한 계측기기 적정 설치 여부 등)
 - 그 밖에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운영기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고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 위원은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한다.
 - 운영기관은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신청업체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업체에서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운영기관은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기타 [부록2]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의 가점·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신청업체는 지원 자격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까지 운영기관에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선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보조사업 관리

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협약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부록 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협약서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서면 협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협약 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의 설비투자비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운영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지원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보조금 포기 신청이 있는 경우
 - 지원업체가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지원업체가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업체가 보조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지원업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부가 조건 이행이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 교부사항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원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

- 지원업체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알리고,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 분			자체조달*	중양조달**
물품, 용역		◦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기 타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양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연차별 추진일정, 설비투자비(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집행계획 및 설치확인 방안을 포함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 및 컨설팅 업체 등과 별도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라. 선급금의 지급

- 운영기관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지원업체에게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원업체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 (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이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 지원업체는 선급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황보고

-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게 보조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지원업체는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설비내역,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사업기간,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지원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 금액을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 운영기관은 변경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사. 사고의 보고

- 지원업체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아.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원설비에 대한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완료(시운전 포함) 후,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가정산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설치완료 서류 검토	운영기관	-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등 준공서류 검토 - 온실가스 감축량 검토
↓		
설치확인	운영기관	- 설비 설치완료 및 운영 여부 현장확인 - 온실가스 감축량 확인
↓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보조금 준공금(잔액) 지급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e-나라도움)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시운전데이터를 통해 예상 감축량을 산정하여 사업 계획서에 제시한 감축 기대효과 달성 시 설치 완료서 제출
- 감축 기대효과 미달성 시 감축목표(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추가 실시(1회이상)하고, 추가 시운전 시에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수치자료(시운전 데이터, 영향 요인 등)를 근거로 원인을 분석하여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 제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준공 이전 연도에는 착수 시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20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e-나라도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할 경우 보조금(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개의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을 수반할 경우, 당해 연도 목표가 완료된 계약 건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음(미완료된 계약 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이월)
- ※ 다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차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 선정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준공 후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3년)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기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교부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설치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 참여 제한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e-나라도움)하여야 한다. 다만, e-나라도움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가.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업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때,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액 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공정률 및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증빙서류에는 사업의 계약사항(변경내역 포함) 및 세부 예산 집행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보고서 확인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 지급 확인서 및 정산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업체는 해당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지정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범위 및 금액이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산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환수 등)될 수 있음
- 지원업체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 정산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 설치 설비의 관리

- 지원업체는 취득한 '탄소중립설비'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리자로서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업체로 하여금 취득한 ‘탄소중립설비’ 등에 대하여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탄소중립설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설치완료 후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지원설비)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e-나라도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라.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 지원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탄소중립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원업체는 사후관리 이후에도 설비 처분의 제한기간 동안에는 설치된 설비를 관리하고, 매년 1월 말까지 ‘탄소중립설비’의 설치·운영현황(지원설비 및 계측설비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가 취득한 ‘탄소중립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업체에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원업체가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탄소중립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운영기관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필요시 승인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사후관리

- 운영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탄소중립설비'에 대하여 지원업체 설비 관리현황 및 감축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만, 사업규모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설비 특성, 설치 연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24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감축실적 보고서 제출 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신청 시 계획했던 예상 감축량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감축효과 미달성에 대한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차년도 감축실적 보고서에 그 결과를 수록해야 한다.

※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업체(A)가 설비를 설치한 업체(B)의 보고서를 제출

- 지원업체는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하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1. 보 칙

가. 사업참여 제한

- 운영기관은 신청자,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록 3] 위반 시 제재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수혜자 및 참여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운영기관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운영기관은 필요시 처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 이전

-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배출권거래법 제8조의2와 동일하게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장에 대한 감축결과의 권리와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감축결과의 권리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 보조금 환수

- 운영기관은 신청업체,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록 3] 위반 시 제재사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 연차별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운영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보조금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 처분통보

- 운영기관은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 개최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 처분통보서에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별지 제27호서식] 처분통보서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마. 이의신청

- 지원업체는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제재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록1]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스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⑦ 기타 공정개선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⑧ 인버터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전력 절감 설비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고효율 설비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변압기, 팬, 펌프, LED 조명 등)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 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단년도 사업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0 이상	50	47	44	41	38	
		150 이상	47	44	41	38	35	
		100 이상	44	41	38	35	32	
		50 이상	41	38	35	32	29	
	50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기업규모별 점수(10점) ※ 상생프로그램은 부사업자(B업체)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10	7	4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 감축설비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절감 설비	
			10		7		4	
		• 연료전환	탄소무배출 연료		바이오매스	기타 저탄소 연료		
			10		7		4	
가점 (10)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5)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팅 예정			
			5		2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특별지구 해당		특별지구 미해당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참여		미참여			
			1		-			
감점 (△5)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미만인 업체					△3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 평가점수 산정방법 :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업체(사업장)를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점 적용기준
 -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공단에서 실시한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에 한하여 가점 5점(수행 완료)을 적용하고, 공고 연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가점 2점(수행 예정) 적용
 - ② 일자리 창출 여부 : '22.11.23.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 부여
- 감점 적용기준
 - ①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이상 달성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감점 적용
 - ②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 적용.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실적 및 계획 (30)	①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의 타당성(15)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감축목표 유지 여부 및 산출 정확성, 신뢰성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100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 ₂ /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률 감축효과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0 이상	50	47	44	41	38
		150 이상	47	44	41	38	35
		100 이상	44	41	38	35	32
		50 이상	41	38	35	32	29
		50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기업규모별 점수(10점) ※ 상생프로그램은 부사업자(B업체)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10	7	4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 감축설비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설비교체
			10		7		4
		• 연료전환	탄소무배출 연료		바이오매스		기타 저탄소 연료
			10		7		4
가점 (10)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5)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팅 예정		
			5		2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특별지구 해당		특별지구 미해당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참여		미참여		
			1		-		
감점 (△5)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미만인 업체					△3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 평가점수 산정방법, 선정기준, 가점 및 감점 적용기준은 “1. 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 (1년차)”과 동일하게 적용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1.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이전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보조금 지급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 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공 통	○운영기관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참고❶,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신설 2021. 12. 14.>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u>1회 이상</u>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u>2회 이상</u>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u>3회 이상</u>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2년

《참고②,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6])》

<신설 2021. 12. 14.>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 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1년

《참고③,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행대상 배제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7])》 <신설 2021. 12. 14.>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항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 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한다)	2년

2. 보조금 환수 조치 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연차별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의 50% 환수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조금액 환수
	○ 설치설비 처분 제한 기간 내 폐기처분 한 경우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환수

<설치설비 처분 제한 기간 내 폐기처분 한 경우 세부 환수 기준>

감축설비 운영기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80%	60%	40%	20%

《참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8])》 <신설 2021. 12. 14.>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 부가금 부과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 명단 등의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1항	공표 사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벌 칙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7. 1. 4.] *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보조금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보조금법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또는 신청인)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보조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사 업 명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사업장명				업 종		
	업 체 일련번호				사업장 일련번호		
	설치장소(주 소)	(우)					
	총괄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신청설비총괄	총 설비개수	(총 개)		총 감축량	tCO ₂ -eq/yr		
	설비투자비(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착수년월	년 월		준공 연도	년		
설비①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②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③	설비명(개수)	(개)	감축량(tCO ₂ -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 설비 단위 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업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직위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설치장소(주소)						
메인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적용 방법론			산정 활동자료	☐ 전기 ☐ ()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투자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여부			☐ 포함되지 않음		☐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¹⁾			☐ 여		☐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 착공 가능		☐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 집행 가능		☐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 중복되지 않음		☐ 중복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부록1]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2					
	2023					
	.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

사후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측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측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측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 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측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㉔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커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투 자 회수기간 산 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라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i>물품 계약</i>			
	(물품2)			
	(공사1) <i>공사 계약</i>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i>자산취득비</i>				
<i>시설비</i>				
<i>일반용역비</i>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컨설팅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④

수행기관(사업 신청업체) 소개서

수행기관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령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 관련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설비 관련 서류	10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1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4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4-2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주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우)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부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할당대상업체 ☐ 비할당대상업체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장명			
	설치장소	(우)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신청정보	방법론구분	☐ 외부사업 ☐ CDM사업 ☐ 기타		등록고유번호
	방법론명			
	총 설비개수	개		총 감축량
	설비명 (총 개)	① (개)	② (개)	③ (개)
	감축량 (tCO ₂ -eq/yr)	① (tCO ₂)	② (tCO ₂)	③ (tCO ₂)
	설비투자비 (VAT 제외)	① (천원)	② (천원)	③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① (천원)	② (천원)	③ (천원)
	준공 연도	① (년)	② (년)	③ (년)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의 방법론 단위 계획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신청 설비	업체명 (주사업자)			업체명 (부사업자)			
	방법론						
	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감 축 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 ₂ -eq/yr		사업후 배출량		tCO ₂ -eq/yr	
	누출량	tCO ₂ -eq/yr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여부				☐ 포함되지 않음		☐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2)				☐ 여		☐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 착공 가능		☐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 집행 가능		☐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 중복되지 않음		☐ 중복	

2)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

2) 사업 목적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

3) 적용설비 및 기술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 추가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

2) 실질적 투자여부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 기술, 증빙자료 첨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 명칭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술

1-2) 적용조건 및 타당성

감축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의 경제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을 구분하여 기술)
	2-2) 사업 시행 이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3) (예상)사업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후 예상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4) (예상)누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방법론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
	3-5) (예상)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4

신청 설비 명세

가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부록1]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2						
	2023						
	.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

사후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측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측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측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 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측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㉔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커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투 자 회수기간 산 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라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i>물품 계약</i>			
	(물품2)			
	(공사1) <i>공사 계약</i>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i>자산취득비</i>				
<i>시설비</i>				
<i>일반용역비</i>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컨설팅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5

수행기관(사업신청 업체) 소개서

☐ 주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부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6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 관련 공통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주사업자, 부사업자)		
	5	사업자등록증(주사업자, 부사업자)		
	6	법인인감증명서(주사업자)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주사업자, 부사업자)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주사업자, 부사업자)		
신청설비 관련 서류	10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1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4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표(20 . .)

구 분		○ 신청업체(○ ○사업장) : ○ 사업 분류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신청 설비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0 이상	50	47	44	41	38	
		150 이상	47	44	41	38	35	
		100 이상	44	41	38	35	32	
		50 이상	41	38	35	32	29	
	50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기업규모별 점수(10점) ※ 상생프로그램은 부사업자(B업체)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10	7	4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 감축설비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설비교체			
			10	7	4			
		• 연료전환	탄소무배출 연료	바이오매스	기타 저탄소 연료			
			10	7	4			
가점 (10)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5)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팅 예정			
			5		2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특별지구 해당		특별지구 미해당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참여		미참여			
			1		-			
감점 (△5)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미만인 업체					△3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합 계		점	평가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환경공단→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 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신 청 내 역				
금년 계획	신 청 금 액			비고
	전회(누계)	금회	누계	
				00년 00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환경부→환경공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단위:천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설비투자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비 고
한국환경공단					

○ 국고보조비율 :

○ 사업내용 :

☐ 예산과목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국환경공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업 체 명(사업장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원설비	설비명	모델명	감축량(tCO ₂ -eq/yr)	예상비용(원)	
정부지원 금액(원)					
사업기간					

□ 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컨설팅비							

-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지원조건

-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라. 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9호서식] 협약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협약 당사자	한국환경공단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지원업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협약 내용	사업명	'23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감축설비 지원 / 상생프로그램 / 청정연료 전환		
	지원설비			
	설비투자비('23년)	₩	총 설비투자비	₩
	정부보조금			
	사업기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내용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업체에게 통보한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제4조(설비의 준공)

- ① 지원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사유서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 ① 한국환경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업체가 제출한 지원설비 설치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적정성 확인 후 지급한다.
- ④ 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21.12)(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의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은 직전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의 보조금 지급 결정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 ③ 지원업체는 지침 내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 한국환경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 ⑥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보조금 정산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책무 규정에 따라 대상 설비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사업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계획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업체의 허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한국환경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성능 및 하자보증)

- ①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설비 및 장비의 검수·확인, 시운전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성과보증 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종료일로부터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이상)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 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 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환경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

① 지원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업체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지원업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감사인에게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관련 정산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해당 업체의 감사보고서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의 정부지원금액은 사후 정산 비용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50~70% 이내로 지급한다.

*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든 경비를 예산비목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하며, 지침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제출함

**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준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함

*** 설비투자비 :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④ 지원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2.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30% 이상 변경하게 될 경우
 3.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시공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4.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 ⑤ 지원업체는 설치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실시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의 감축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감축실적 확인에 활용 가능하나, 감축 실적의 인정여부 및 인정량은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안 작성 시 확정되며, 지원사업 선정이 감축실적 인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업체간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 사상의 책임이 없음
-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보조금 포기신청서					
㉠ 기본정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설치장소	주 소			
		전 화			
	신청설비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금액		
㉡ 포기사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설치 지연			
	☐	기타사유 ()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 : 사유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관리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설비	No.	설비명	용량	수량	보조금(원)
	계				
	1				
	2				
	3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2. 추진현황(설비 설치현황)

○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비 목	설비투자비	보조금	집행액	잔 액
계				
유형자산(430)				
건설비(420)				
운영비(210)				

4. 특이사항

○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보조사업명		☐ 온실가스 감축설비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본 사	주 소			
		전 화			
	설 치 지	주 소			
		전 화			
	담 당 자	담당자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비내역,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	사업기간			
	☐	설치위치			
	☐	보조비목 변경(30% 이상)			
	☐	기타 변경사항(예상감축량 등)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사업개요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설비	(주(主)설비 종류, 용량, 수량 등)			
사업내용				
설비투자비 (원)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원연도)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 20 . .	총 사업기간		
감축효과 (tCO ₂ e/yr)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			

☐ 변경사유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 변경내용 (변경항목의 당초 대비 변경사항 제시)

○

☐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등)

○

※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 부 서 류	비 고
설비내역,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도면 등	
사업기간	☐ 선하증권(선적확인증), 적하증권, 선적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제작요청서(공장발주서) ☐ 제작 지연 확인 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업체별 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설치위치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설비 위치도, 도면 등	업체별 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보조비목 변경 (30% 이상)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도면 등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체명(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 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No.	설 비 명	보조금 지급 결정액	기 지급금액	금회 신청금액
	계			
1				
2				

3. 보조금 지급처

-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예금주명	한국재정정보원	입금식별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 e나라도움 연계 통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 부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No.	설 비 명	보조금 지급 결정액	기 지급금액	금회 신청금액
	계			
1				
2				

3. 보조금 지급처

-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예금주명	한국재정정보원	입금식별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 e나라도움 연계 통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 부 1.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21호서식]
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환경공단→업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대표자		
	주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원)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기타
5. 교부조건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e나라도움으로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보조금 지급 확인서						
수령일	보조금 수령액	지급일	집 행 액(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1) 이체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e나라도움으로 확인 불가 시, 해당 양식으로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 사업 개요

업 체 명	(주)○○○○	사업장명	○○○○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사 업 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중 택1		
지원설비	[지원설비*] : 단위사업명, 물품명 등 기재 * 「사업 운영 지침」의 [부록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명		
사업내용	2~3줄로 간략하게 작성		
설비투자비 (원)	구 분	설비투자비	보조금
	계		
	2023년		
	2024년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3. 0. ~ 2023.00.		총 사업기간 2023. 0. ~ 2024.00.
설치완료일 (지원연도)	2023.11.00. (2023년)		준공(예정)일 2024.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사업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23.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보 조 금			
			지원액 (①=②+④)	교부액 (②)	집행액 (③)	잔액 (④)
계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컨설팅				
건설비 (420)	설시설계비	설계비				
	시설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감리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작성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23.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계약명*	설비투자비**			집행액**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운영비 (210)	소계								
	일반용역비	컨설팅	[용역]						
건설비 (420)	소계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소계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비 및 집행액 작성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23.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계약명*	추진현황**			비고 (지연사유 등)
				계획	실적	진도율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컨설팅	[용역]	50	50	100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100	100	100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50	50	100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50	50	100	
		설비구입비	[물품]	장비 입고	장비 입고	100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 및 실적이 공정률(%)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예 : 장비 입고)으로 작성

☐ 사진 대지(필요 시)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 (첨부서류) 필요시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물품 계약	☐ Vendor Print, 원자재 발주내역, 현장 입고사진 등	
용역 계약	☐ 용역 공정표(계획 대비 실적공정 확인), 중간 성과품 등	
공사 계약	☐ 공사 공정표(계획 대비 실적공정 확인), 현장사진 등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 부사업자 표기

2. 지원설비명 :

3. 설비투자비 :

4. 보조금 :

5. 착수일 :

6. 준공일 :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직인)

- 첨부
1. 준공 서류(준공계, 도면, 준공내역서 등)
 2.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고서
 3. 신청 시 제시한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자료(시운전데이터 등)
 4. 감축량 미달성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필요 시)
 5. 설비 위치도(사업 전·후 비교, 도면 포함)
 6. 현장 설치사진
 7. 하자이행보증보험(지원업체↔물품, 시공업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고서

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작

작성방법)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 사업 전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배출량을 구체적 수식으로 제시)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열(스팀) 회수 열량

$$\text{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text{eq/일)} = \text{회수열량[Gcal/일]} \times 4.1868[\text{GJ/Gcal}] \div 1,000[\text{GJ/TJ}] \times \text{열(스팀 배출계수)[tCO}_2\text{eq/TJ}]$$

- 사업 후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배출량을 구체적 수식으로 제시)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열(스팀) 회수 열량

$$\text{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text{eq/일)} = \text{회수열량[Gcal/일]} \times 4.1868[\text{GJ/Gcal}] \div 1,000[\text{GJ/TJ}] \times \text{열(스팀 배출계수)[tCO}_2\text{eq/TJ}]$$

- 사업 후 온실가스 감축량 제시 (1년 기준으로 환산)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제시

예) 온실가스 감축량

$$\text{온실가스 감축량} = \text{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text{/일]} - \text{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text{eq/일]}$$

※ 가동조건을 고려하여 1년 기준 감축량으로 환산

②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 관리 방식

- 모니터링 체계

작성방법) 사업 전·후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전력량, 유량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데이터 관리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에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방법, 주기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데이터 및 변수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 정의

작성방법) 아래 표를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를 정의
예시) 열(스팀) 배출 계수

데이터 및 변수	열(스팀)배출계수								
단위	kgCO2eq/TJ								
설명	열병합 열(스팀) 배출계수 <table><tr><td>CO₂ (kgCO2/TJ)</td><td>CH₄ (kgCH4/TJ)</td><td>N₂O(kgN2O/TJ)</td></tr><tr><td>60,760</td><td>2.053</td><td>0.549</td></tr></table> 60,760*1 + 2.053*21 + 0.549*310 = 60,974			CO ₂ (kgCO2/TJ)	CH ₄ (kgCH4/TJ)	N ₂ O(kgN2O/TJ)	60,760	2.053	0.549
CO ₂ (kgCO2/TJ)	CH ₄ (kgCH4/TJ)	N ₂ O(kgN2O/TJ)							
60,760	2.053	0.549							
데이터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10호)								
값	60,974								
비고									

※ 위 양식은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축량을 산정한 관련 엑셀 파일도 함께 제출

현장 설치 사진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 지원대상 설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

□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업 체 명 (사업장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지원설비	설비투자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2023.00.00. ~2023.00.00. (2023.00.00.)						

* 사업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

** 단년도 사업 : “단년도”로 표기, 다년도 사업 : “다년도(0년차)”로 표기

□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계 (①=②+③)	보조금 (②)	자부담금 (③)	보조금 비율 (④=②÷①×100)
			%

□ 보조금 수령 및 지급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사업연도)	수령일	보조금 수령액	지급일	집행(예상)액				비고
				설비투자비 (①=②+③)	보조금 (②)	자부담금		
						설비투자비 (③)	미지원* (④)	
계								
2023년(1차)	2023.00.00		2023.00.00					
2023년(2차)								
.								

* 미지원(④)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 등

※ 자부담금만 지급한 경우 “지급일” 및 “집행(예상)액”만 작성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예상)액” 작성

□ 비목별 집행내역

○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계	운영비	건설비			유형자산
		일반용역비 (컨설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집행액						

※ 집행잔액(보조금(준공금) 등) 및 설비투자비 미지원(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 등)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 비목별 명세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보조사업비	집행(예상)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컨설팅비				
건설비(420)	시설설계비(02)	설계비				
		소 계				
		설치공사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철거비				
	감리비(04)	감리비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소 계				
		설비구입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철거비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비에 반드시 0원으로 표기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역	거래처
계		-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소 계		-			
건설비(420)	실시설계비(02)				
소 계		-			
건설비(420)	시설비(03)				
소 계		-			
건설비(420)	감리비(04)				
소 계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2022.00.00.		(예시) ○○설비 선급금 지급	(주)○○○○○
				(예시) ○○설비 준공금 지급	(주)○○○○○
소 계		-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거래처”만 작성

□ 집행내역 자체 검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집행내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설비투자비 (①)				
설비투자비 제외액 (②)				
집행액 계 (③=①+②)				
일반용역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 집행액(③)은 “집행내역(총괄)”의 집행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집행액 중 설비투자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설비투자비 제외액(②)에 작성

※ 첨 부 : 준공서류(준공계, 준공내역서, 증빙서류 등) 1식.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사업명							
업체명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사업기간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정부보조금(가)	자기부담금(나)	합계(다=가+나)	보조금비율(에=가÷다)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f)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이월액 (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j-k)
‘합계’와 동일			‘당기분집행액’과 동일				
당기분집행잔액 (m=d-f)	전기이월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이자 (p)	차기이월액 (q)	반환대상액 (r=o+p+k-q)	보조금 반환액 (s)	자기부담금 반환액 (t=r-s)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 불필요 * 자기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4. 취득재산 관리대장 1부. 끝.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급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원, %)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02)	설계비				
	시설비(03)	공사비				
	감리비(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14)	컨설팅비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02)	설계비				
	시설비(03)	공사비				
	감리비(04)	감리비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14)	컨설팅비				

[별지 제24호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지원 연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원)	내용 연수(년)	지원율 (%)	비고

[별지 제25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설치장소	주 소			
		전 화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 분 예 정 일	. .
			처분금액		
㉡ 처분사유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원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온실가스 감축량

No.	설 비 명	온실가스 감축량(tCO ₂ e/yr)		비고
		계 획	결 과	
1				
2				
3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설비 설치사진
2.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자료
3. 기타 증빙자료

20 . . .

지원업체(대표자) :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첨 부]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별지 제27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관리번호 _____ 귀 사업장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처분
통보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설비	설비명	모델명		공급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28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처분내용			
처분 고지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받은 자와의 관계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종합평가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대표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지원/ 미지원)
	A	B	C	D	E	F	G	H	I		

☐ 작성자 : (서명)

☐ 검토자 : (서명)

의 결 문

20 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0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비밀 준수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 서약서

본인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위원회 위원장 귀하